

의안 검토 보고서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. 6. 29. 대전광역시장
2. 건 명 : 대전광역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3. 안 건 요 지 : 따 로 붙 임
4. 검 토 의 견 : 따 로 붙 임

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7년 7월 일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장 예 순

검 토 보 고

본 안건은 2007년 6월 29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7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「유통산업발전법」의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조정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법령과의 중복규정을 삭제함(안 제2조 및 제6조).

3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던 「유통산업 발전법」과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,
-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당초 경제과학국장이던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조정하고
- 상위 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자치 입법안심사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